

—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년 3월 30일

나. 제안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1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01년 4월 3일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

나. 제안이유

○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다.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내용

○ 조정규모 및 조정내용

◆ 총 ⇒ 77필지 91,142.6㎡

구 분	필 수	면 적	조정내용
◆ 임은동 → 상모동 편입	15필지	55,842.3㎡	행정·법정동
◆ 임은동 → 상모동 편입	3필지	929.7㎡	법정동
◆ 임은동 → 사곡동 편입	7필지	4,598.5㎡	"
◆ 상모동 → 임은동 편입	5필지	5,525.5㎡	법정·행정동
◆ 사곡동 → 임은동 편입	8필지	2,942.8㎡	법정동
◆ 사곡동 → 상모동 편입	32필지	17,958.4㎡	법정동
◆ 상모동 → 사곡동 편입	7필지	3,345.4㎡	법정동

라. 조정사유

- 상모사곡, 임은동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한 필지가 2개의 법정·행정동으로 분리되어 행정추진 및 주민불편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행정동으로 분리됨으로 주민화합 및 행정효율성 저해

마.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3항(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예관한규칙 제11조(지방의회 의견서 첨부)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경 도

- 행정구역변경 사항중 동 경계지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임.
- 먼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예관한규칙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조정 승인 신청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 상모 및 사곡구획정리지구 내 지역으로서 도로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및 법정동을 조정하고, 동일 필지에 대한 2개의 법정·행정동으로 분리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의견채택(별첨내용)